

2019년도 제1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8. 13.(화요일), 16:00
- 장 소 : 보호원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분과위원장 대행)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4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817건(안건번호 제2019-90855호~9245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19-90855호~90857호 웹하드에서 소설, 영화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814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50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4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이견이 없으며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회의록 공개에 찬성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전번호 제2019-90855호~92450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2,817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90855호는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현재 판매 중인 소설의 복제물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한 사안임

(참고 자료를 제시하면서)2019. 8. 2. e-Book으로 출간된 최신 소설이며 약 10,8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90856호는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2016. 8. 8.부터 유료 연재 중인 소설의 1화부터 790화까지를 불법 복제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한 사안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90855호~9085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현재 판매 중인 소설 복제물을 압축파일 형태로 다량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A 위원 : 판매 중인 소설의 복제물을 무단 제공하고 있으므로, 심의 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건번호 제2019-90855호~908564호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9085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전체분량(1시간 56분)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2019. 2.경 개봉하였음
- A 위원 : 애니메이션 영화의 전체분량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 동의하며 데드카피이므로 이견 없이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90857호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90858호~9245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90858호~92450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을 제시하면서)특히 안전번호 제2019-90858호의 저작물명은 가수 '태연'이 부른 '그대라는 시'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곡은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OST로 최근 시정권고 심의에서 많이 보이고 있음
(다운로드 화면을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압축파일을 다운

로드 하면 '그대라는 시' 음원파일 뿐만 아니라 100곡의 최신 인기가
요를 제공하고 있음

(불법복제물 제공화면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19-90876호는 미국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7 Rings'라는 곡인데, 해당 곡은 2019년 발
매된 '7 rings' 앨범에 수록되어 있음

- B 위원 : 안건번호 제2019-90876호도 압축파일로 여러 곡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다운로드 화면을 제시하면서)해당 안건 또한 약
109곡의 최신 인기팝송 음원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다운로드 화면을 제시하면서)마찬가지로, 안건
번호 제2019-90888호는 가수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인데, 올해
상반기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해당 안건의 경우 다른 가수의 음원은 없으며 '빌리 아일리시'의 싱
글앨범 전곡이 제공되고 있음

(다운로드 화면,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국내 영화 '기생충'의 불법복
제물 또한 현재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음

참고로 영화 '기생충'은 어제 개최된 제3분과 심의에서도 시정권고를
가결한 바 있음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92194
호의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미국드라마도 인기있는 해외 저작물로, 모
바일 웹하드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짤내투어, 미스터 기간
제 등 최근에 방영된 최신 방송물들이 웹하드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
공되고 있음

- A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방송 프로그램, 게임, 만화, 출판물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B 위원 :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90858호~9245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제2019-90855호~92450호의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o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8. 20.

분과위원장 대행 임진모

위원 박성호